

1.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1) 학칙의 운영 목적과 대학의 교육목표를 구분하여 명시하고자 함
- 2)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대학의 의지를 학칙에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학칙의 목적과 대학의 교육목표 구분 정리 명시함
- 2)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등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
제1조(목적) 원광보건대학교(이하 "우리대학"이라 한다)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 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 덕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 키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덕성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 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원광보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학 사운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
제2조(교육목표)	제2조(교육목표) 우리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 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덕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실 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덕 성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제80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우리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. 1. ~ 5. (생략) 6. 산학협력단에는 귀금속보석연구센터, 창업보육센터, 산 단캠퍼스지원단,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, 보건과학연구소, 간호과학연구소, 문화관광연구소, 학교기업사업단, <u>현장실 습지원센터</u> 를 둔다. 7. ~8. (생략)	제80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<u>현장실습</u> <u>지원센터, 기업신속대응센터, 창의융합센터</u> 를 둔다. 7. ~8. (생략)
<신설>	제21장 장애학생지원 제94조(장애학생지원 등)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 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	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